

인도양 및 동남아시아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 보존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TURTLES AND THEIR HABITATS
OF THE INDIAN OCEAN AND SOUTH-EAST ASIA)

모(母)협정 이동성 야생 동물 보존 협약 하에 체결

2001년 6월 23일 마닐라
2009년 3월 1일 만장일치로 개정



인도양 및 동남아시아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 보존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

조인국은

이 지역에 서식하는 6 종의 바다거북이 취약, 위기, 위급 등급으로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국제보호연맹 위기 종에 대한 적색목록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에 등재된 점을 인식하며,

바다거북은 이동성 야생 동물 보존 협약(CMS: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자연과 자연자원 보존에 관한 아프리카협약 (Africa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동아프리카 해양 및 연안환경의 보존, 관리, 개발을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of the Eastern African Region), 기타 관련 협정의 본문과 부록에 등재된 보호 우선대상임을 주의하며,

조인국은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 보호가 아세안 바다거북보호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SEAN Sea)와 바다거북의 섬 서식지 보호지역에 대한 양해협약(TIHPA: Protection and the Memorandum of Agreement on the Turtle Islands Heritage Protected Area) 에서 특별히 다루어 지고 있음을 인식 하며,

조인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Law of the Sea), 유엔식량농업기구 책임 있는 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 여타 국제적 수단이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 하며,

조인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홍해와 아덴만 환경보호를 위한 지역기구(PERSGA: Regional Organis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of the Red Sea and Gulf of Aden),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역기구(ROPME: Regional Organis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등의 지역기구가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인식 하며,

조인국은 바다거북의 회유성과 광범위한 분포로 바다거북 생존이 넓은 지역과 장거리에 걸친 해양 및 연한 서식지 보호에 의존함을 인정 하며,

조인국은 바다거북알 수집, 바다거북 포획, 부적절한 인공부화, 서식지의 파괴 및 변형, 연안개발, 환경오염, 어로활동, 바다양식업, 관광산업 등의 인간활동이 바다거북 개체군에 직·간접의 위협을 줄 수 있음을 유념 하며,

조인국은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 보호활동과 조인국의 연안개발과 해양활동을 포함한 사회경제 개발활동 간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 하며,

조인국은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 하며,

조인국은 바다거북과 서식지에 대한 협력적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민간단체뿐 아니라 이 지역 모든 국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 하며,

조인국은 이 지역 바다거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민과 어선을 가진 비조인국과 이 양해각서의 실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전문가를 가진 국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며,

조인국은 바다거북 개체군과 서식지에 닥친 위협 해결을 위한 조화로운 협력을 즉시 취해야 함을 유념 하며,

조인국은 이 지역 전반에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 보호 관리를 위한 협력적 조치가 이 양해각서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 하며,

가입국은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 보호상태 향상을 위하여 양해각서 상 언급된 조치를 개별적이고 집단적으로 취할 것에 동의한다.

정의

1. 바다거북은 아래 명기된 종을 의미한다:

<u>이름</u>	<u>학명</u>
붉은 바다거북	<i>Caretta caretta</i>
꼬마 바다거북	<i>Lepidochelys olivacea</i>
푸른바다거북	<i>Chelonia mydas</i>
매부리 바다거북	<i>Eretmochelys imbricata</i>
장수바다거북	<i>Dermochelys coriacea</i>
납작등 바다거북	<i>Natator depressus</i>

2. 서식지는 바다거북이 생활사의 각 단계에서 이용하는 수중환경과 육지환경 모두를 의미한다.
3. 지역은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및 그 인접바다와 토러스해협 동부에 이르는 바다와 연안국가 모두를 의미한다.
4. 바다거북 보호상태는 바다거북 종의 장기적 분포와 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이다.
5. 다음의 경우 보호의 바람직한 상태이다:
 - ㄱ) 개체군 변동자료가 바다거북 종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서 독자적으로 생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줄 때
 - ㄴ) 장기적으로 바다거북 종의 수가 현재 줄어들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도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 ㄷ) 현재와 예측가능한 장래에 장기적으로 바다거북종 개체군 유지에 충분한 서식지가 있을 때
 - ㄹ) 잠재적으로 수용 가능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야생 동·식물의 현명한 관리가 가능할 경우 바다거북 종의 분포와 수가 그 역사적 분포지역과 수에 근접할 때

목적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최고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고 조인국의 환경적·경제사회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조치

양해각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에 입각한 조인국은:

1.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의 바람직한 보호상태 유지 달성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2. 이 양해각서의 부속서에서 보호와 관리 계획을 제공하고 필요한 가용자원이 있다면 이를 실행한다. 보호 관리 계획은 반드시 바다거북 서식지 보호와 의도적 포획, 무역, 부수어획 (어로활동 시 의도하지 않은 바다거북 포획)을 비롯한 위협 감소, 연구, 교육, 정보공유, 능력배양 사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필요하다면 바다거북과 서식지 보호 관련 국가법률 재검토, 재정비, 재규정,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법규의 이행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4. 이 지역에서 바다거북의 법률에 의한 보호 증대를 위하여 바다거북과 그 서식지 보호에 가장 관련성 높은 국제수단을 수용하거나 비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5. 조인국, 하위지역기구(sub-regional institutions), 이해국가, 이해기관 사이에서 의사소통 지원, 보고활동 촉진, 조치 이행 촉진을 지원할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 사무국은 조인국 모두와 기본원칙 5 조와 6 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기구에서 전달받은 모든 국가 보고서를 전달하고 보호 관리계획의 이행 과정에 대한 정기검토를 준비하고 조인국에게 위임 받은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사무국은 모든 제안을 고려한 후 첫 번째 회의에서 조인국 모두의 만장일치로 적합한 국가나 지역 혹은 국제기구 사무소에 위치를 정한다.
6. 이 지역의 바다거북과 서식지 보호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인국에게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과학·기술·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조인국은 바다거북생물학, 해양자원관리, 연안개발, 사회경제학, 법률, 어업기술, 기타 관련 규율 등에 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회 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조인국은 자문위원회의 크기, 구성, 임명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7. 양해각서 상의 조치와 조인국 간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창구로서 기능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을 지명하여 이 기관(기관변동 시 고지 요구됨)과의 연락을 위한 세부사항을 사무국에 전달해야 한다.
8. 사무국에 양해각서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주기는 조인국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다
9. 아래 목적을 위한 특별 기금설립 등 재정확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첫 번째 회의에서 평가해야 한다.
 - ㄱ) 사무국 자문위원회 운영 및 양해각서상 조치이행에 필요한 지출액 충족
 - ㄴ) 양해각서 상 조인국의 책임 이행 지원

기본원칙

1. 이 양해각서는 이동성 야생 동물 보호 협약 (CITES) 제4조5항에 대한 동의이다. 이 양해각서는 두 번째 조인국의 서명 석 달 이후 첫 날에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이후 국가들의 서명에 무기한 개방되며 새로운 조인국은 서명 석 달 후 첫날부터 그 국가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2. 각 조인국은 그들의 법률 내에서 양해각서를 아래에 대하여 실행한다.
 - ㄱ) 이 지역의 영토 내에서
 - ㄴ) 이 지역의 영해 내에서 그리고
 - ㄷ) 국적기를 달고 이 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서

3. 보호 관리 계획을 포함한 양해각서 이행은 개별조인국, 바다거북 보호에 관련이 있거나 기술적으로 합당한 개인 이나 기관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정기회의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회의는 사무국이 소집해야 하며 조인국 중 한곳이 주관하거나 조직하거나 협력하여 처음에는 일년에 한 번씩 열어야 한다. 회의 주기는 가입국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4. 보호 관리 계획을 포함한 양해각서는 조인국 만장일치로 수정할 수 있다. 적합한 때에 조인국은 양해각서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5. 조인국은 상호합의를 통하여 이 양해각서에 합치하는 양자적, 하위지역 (sub-regional) 혹은 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6. 양해각서상의 조치는 이 지역의 하위지역 기구와 조인국간 조율되어야 한다.
7. 양해각서 원문은 아랍어, 영어, 불어이며 각 언어로 쓰여진 양해각서는 동등하게 정본이며 유엔환경기구 하의 이동성 야생 동물 보호 협약 사무국 (UNEP/CMS secretariat) 에 기탁해야 한다.
8. 이 양해각서는 국제법을 준수하여 제정되고, 보호 관리 계획에 세부화된 조치보다 더 강력한 국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9. 이 양해각서는 무기한 효력을 유지하며, 단 조인국은 기탁기구에 1 년 전 통보하는 것으로 양해각서 참가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